

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586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03. 07. 이쌍자 의원 등 6인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03. 14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03. 20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이유

무분별한 관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, 소음, 사생활 침해 문제 등 군민이 겪게 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, 관광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파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군민이 주도적인 관광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고성군 공정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공정관광 및 공정관광사업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나.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다.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, 지원·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라. 공정관광주민협의체 및 공정관광사업협의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마.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관광진흥법」
나. 입법예고(2023. 3. 7. ~ 2023. 3. 13.): 의견있음

제 정 안	제출의견(문화관광과)
<p>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<u>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 다.</u></p>	<p>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<u>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
<p>제5조(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) ①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<u>매년</u>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) ①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<u>5년</u>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</p>

5. 본문 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□ 조례 제정의 취지

- 관광객 소비중심의 관광산업이 지역주민의 생활과 문화·환경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관광을 하고자 하는 사회변화에 맞추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관계를 정립 및 개선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정관광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 내용 검토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 - 조례 제정 목적 명시
 - ‘공정관광’, ‘공정관광사업체’의 개념을 정의함.
-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-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, 거버넌스 구축, 공정관광사업체의 공정관광 상품 개발 협조를 군수의 책무로 규정함.
-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, 지원·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 -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과 재정지원 근거 규정함.
-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
- 군민이 공정관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공정관광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관광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
 - ※ 「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관광협의회 미설립
- 공정관광사업협의체가 자발적으로 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
-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제10조)
 - DMO(지역대표 관광조직, 관광 플랫폼) 육성·지원 근거 규정
 - 공정관광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근거 규정

□ 집행부 의견에 대한 검토

- 안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

본 조례안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안 제4조와 같이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임.
- 안 제5조(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)

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한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는 관광진흥계획, 관광특구진흥계획 등을 수립하고 공정관광 관련한 사항을 그 계획에 포함하거나 같음하는 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으며 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주기는 매년, 5년, 5년으로 하되 매년 수정 보완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리함. 고성군의 경우,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같음할 수 없고 변화하는 관광트렌드를 반영하여 고성군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이므로 안 제5조와 같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음.

□ 종합의견

-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,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공정관광에 대한 주민·관광사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관광두레 등 주민관광사업체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참여가 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조례 시행 초기 주민 교육과 홍보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3. 20. 원안가결 함.